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5월 12일, 이은미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3년 5월 17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은미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안에 ‘미등록 경로당’ 정의를 규정하며, 자치사무인 미등록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 미등록 경로당을 규정(안 제2조)

나. 지원대상에 미등록 경로당을 추가(안 제3조)

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 항목으로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구입비를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친목활동 및 여가 등으로 실제 이용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별개의 시설(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 미등록 경로당을 정의하고,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 품목비에 한하여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은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지자체의 자치사무라 할 것이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자주적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본 조례안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됨.

○ 검토결과,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률의 의도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특정사항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존 경로당 이용자들의 상대적인 우려 및 분열,
무분별한 미등록 경로당의 급증 등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미등록 경로당 지정 기준 및 지원 계획을 확립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